

##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(안)

의안 번호	125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0. 5. 19  
발의자 : 강두석의원외5인

### 1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우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과 우리구의회 의사를 구정 전반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함.

### 2. 주요골자

#### 가. 구정질문 및 답변

- 기간 : 2000. 5. 25 ~ 5. 26(2일간)
- 장소 :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
- 출석대상 : 구청장, 부구청장, 행정관리국장, 재무국장, 생활복지국장, 도시관리국장, 건설교통국장, 보건소장

### 3. 참고사항

가. 지방자치법 제37조

나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

다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회선임결의(안)

의안 번호	124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0. 5. 19  
발의자 : 박남오의원외6인

### 1. 제안이유

(1) 결산검사위원 : 영등포구의회 의원 1인과 공인회계사 2인

(2) 선임방법

- 가. 의장이 추천하는 결산검사위원 3인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
- 나. 선임된 검사위원 대표자는 위원중 연장자로 한다.

### 2. 주요골자

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은 우리구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의원 1인 및 공인회계사 2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함

### 3. 관련법규

가. 지방자치법 제125조

나.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

다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선임·운영 및 실비면 상조례 제4조